

## 서울특별시 조례 만(滿) 나이 일괄개정 조례안

---

### 제안설명

발의자 : 옥재은 의원(중구2, 국민의힘)

의안번호 : 578

안녕하십니까.

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을 다 하시는  
이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 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.

중구 제2선거구 출신 옥재은 의원입니다.

이번 회기를 통해 「서울특별시 조례 만(滿) 나이 일괄개정  
조례안」을 제안하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 
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

최근 「민법」, 「행정기본법」이 일부개정 되어  
'만 나이'로 나이를 셈하도록  
연수(年數)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한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적시적기에  
서울특별시 조례 중 나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
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 
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 
바랍니다.

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동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어 법 체계정합성 확보로  
개정 예정에 있는 조례들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 
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